

- '11년도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-
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

2011. 7.



I 개 요

1. 목 적

-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건설업체에 대해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 및 확인을 실시토록 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.

※ 종전의 '자율안전관리업체' 명칭을 '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업체'로 변경(11.3.3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)

2. 관련 규정

- 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 내지 124조, 별표15의2

3. 지정 기준

-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년도 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

☞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업체 중 상위 20%(11.3.3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)

4. 혜 택

-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향후 1년간 착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이행여부 자체확인
 - 자체심사 및 확인은 건설분야 지도사,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토록 하고, 그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.

5. 지정해제

-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즉시 지정에서 제외('11.3.3 신설)
- ※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 시 다음 연도에서 제외
- ※ 고용노동부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현장 즉시 안전공단의 확인 재개

II '11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결과

- 지정 대상 :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
- 지정 기준 : 대상 건설업체 중 2010년도 환산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
- 지정 결과 : (주)대우건설, 대림산업(주) 등 40개 건설업체

시공능력 평가액순위	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명단
100위이내	(주)대우건설, 대림산업(주), (주)포스코건설, 롯데건설(주), (주)한화건설, 금호산업(주), 쌍용건설(주), 한라건설(주), (주)케이씨씨건설, 삼성중공업(주), 삼성엔지니어링(주), 고려개발(주), (주)삼호, (주)대우엔지니어링, (주)반도건설, 삼성에버랜드(주), (주)부영주택, 대우조선해양건설(주), (주)서브윈, (주)효성, (주)동광주택
101위 ~ 200위이내	동광건설(주), (주)남흥건설, 아이에스동서(주), (주)대동종합건설, (주)모아종합건설, 삼보이엔씨(주), 한솔이엠이(주), (주)신일, 동양종합건설(주), (주)신한, (주)인터컨스텍, (주)파라다이스글로벌, 해동건설(주), 삼능건설(주), (주)한국가스기술공사, (주)유승건설, 세원건설(주), 풍창건설(주), 경일건설(주)

- 지정 기간 : '11. 8. 1 ~ '12. 7. 31(1년)
- 해 택 :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하고 자체적으로 심사 및 확인